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55
----------	-------

발의연월일 : 2024. 1. 10.

발 의 자 : 김성원 · 김용관 · 류성걸
박대수 · 양금희 · 이인선
이종성 · 정운천 · 최영희
태영호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른다.

제2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산업표준화법」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고, 인증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로 한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 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3조에 따른다.</u>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삭 제>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의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의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④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u>수 있다.</u>	
<u>⑤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u><삭 제></u>
<u>⑥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u>	<u><삭 제></u>

신·구조문대비표

– 13 –

② · ③ (생략)	<u>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② (생략) 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u> ④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u> ⑤ <u>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u> <u><삭 제></u>

<u>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u><삭 제></u>
<u>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u><삭 제></u>